

아파트 대피시설 인정서(변경)

- 변경대상 인정번호 : 제 8 호
- 변경대상 상품명 :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-411호(2020.5.27.)로 인정된 승강식피난기(무동력, '살리고승강기')
- 변경내용 :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-411호(2020.5.27.)로 인정된 상기 제품의 일부 취소에 관한 건

당초	변경
덮개형, 개방형 제품 (실내, 외부 설치 가능)	개방형 제품 (외부만 설치 가능)

- 대피시설 형식 : 탈출형 대피시설
- 인정업체 및 대표자 : 주식회사 디딤돌(대표자: 한정권)
 - 사업자등록번호 : 786-81-00710
- 공장소재지 : 전북 완주군 테크노밸리3로 70
- 유효기간 : 2023년 5월 26일까지

「건축법 시행령」 제46조제5항제4호에 따라 인정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-411호(2020.5.27.) 제품을 위와 같이 변경 인정합니다.

* 「아파트 대피시설 성능인정 등에 관한 지침」 제3장 대피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미준수 시 인정 취소될 수 있음

2020년 12월 16일

국토교통부장관



첨부서류 : 제품 설계도서

아파트 대피시설 인정(변경) 조건

아파트 대피시설을 인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준수하지 않은 경우 대피시설 인정이 취소될 수 있음

가. 「아파트 대피시설 성능 인정 등에 관한 지침」에서 정하고 있는 성능인정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

나. 「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(NFSC 301)」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기준을 준수할 것

다. 장기간 미사용에 따른 노후화 등으로 인한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유지관리 방안에 따라 연 1회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것

라. 거실과 대피공간 사이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

마. 대피시설에 대하여 3년 간 무상보증 기간 종료 후에도 고장시 수리가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, 이와 관련된 내용을 설계자, 시공사, 사용자 등에게 고지할 것.

바.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-411호(2020.5.27.)로 인정된 덮개형, 개방형 제품 중 덮개형 제품을 취소하고, 개방형 제품의 실내 설치 금지에 관한 변경으로 이를 준수할 것. 끝.